

2024년 제4차 노사협의회 결과

□ 개 요

○ 일 시 : 2024. 12. 26.(목) ~ 12. 30.(월)

○ 방 법 : 서면회의

○ 참여위원/재적위원 : 8명/8명

- 사용자측 위원(4명)

· 박충훈 부원장, 김점산 기획조정본부장, 정형기 인사총무부장, 정용욱 재무관리부장

- 근로자측 위원(4명)

· 이양주 선임연구위원, 이근복 연구위원, 황지현 연구원, 김태옥 연구원

□ 주요 내용 ... 붙임 참조

구 분	내 용
의결사항	■ 노사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(안)
협의사항	■ 기관 이전 관련 자세한 진행상황 공유 요청 ■ 육아시간 대상 확대 ■ 출장 여비 지급 문자 시 출장 정보 추가
보고사항	■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

※ 보고사항 중 ① “인력계획에 관한 사항”은 부서회의 게시판 주간점검회의 자료로 업데이트 중, ② “경제적·재정적 상황”은 2024년도 예산서 참고

2024년 제4차 GRI노사협의회 결과 보고

구 분	안건 내용	비고				
의 결 사 항	1. 노사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(안) : 원안의결 ○ 개정이유 - 당연직위원인 원장 공석 등의 사유로 노사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- 사용자위원 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보직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직책명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○ 주요 개정사항 - 협의회의 구성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개정 (안 제6조 제1항) - 사용자 위원을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 (안 제6조 제3항) ○ 신구조문대비표 <table><thead><tr><th>현행</th><th>개정(안)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 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근로자위원”이라 한다)은 근로자가 선출하되,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.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사용자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다. 1. 원장 2. 부원장 3. 기타 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3인 </td><td> 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기획조정본부장, 인사총무부장, 재무관리부장 등 원장이 위촉하는 직책자 </td></tr></tbody></table>	현행	개정(안)	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근로자위원”이라 한다)은 근로자가 선출하되,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.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사용자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다. 1. 원장 2. 부원장 3. 기타 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3인	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기획조정본부장, 인사총무부장, 재무관리부장 등 원장이 위촉하는 직책자	- 기타 의견: 10명은 많으므로 6명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됨 - 기타 의견에 대한 검토: 규약에는 법령 기준에 따라 명시하되, 정·현원,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예정
	현행	개정(안)				
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근로자위원”이라 한다)은 근로자가 선출하되,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.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“사용자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다. 1. 원장 2. 부원장 3. 기타 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3인	제6조(협의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기획조정본부장, 인사총무부장, 재무관리부장 등 원장이 위촉하는 직책자					

협 의 사 항	1. (노측) 기관 이전 관련 자세한 진행상황 공유 요청 ☐ 검토의견 - 북부 부분이전과 관련하여, 12.30.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경기연구원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, 그 가운데 35억원 규모의 부분이전 예산이 포함되었음 - 이전까지는 북부이전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, 사전검토 이외에 별도의 추진사항이 없었음 -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연구원에서는 1월초 연구원 차원의 북부이전TF를 구성하고, 이전지 및 이전 직원에 대한 복지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논의할 예정 - 북부이전TF에서는 다양한 직군의 참여를 통해 진행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	
	2. (노측) 육아시간 대상 확대 ☐ 제안사항 - 현재 원내 내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 연령이 5세까지인데 최근 법이 바뀌어 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음/ 이를 반영해 원내 육아시간 내규도 8세 혹은 선도적으로 12세까지 확대 필요 ☐ 검토의견 - '25년도에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, 해당 내용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때 요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 논의	
	3. (노측) 출장 여비 지급 문자 시 출장 정보 추가 ☐ 제안사항 - 연구직의 경우 출장이 잦아 여비 지급시 어떤 출장인지 구분이 어려움. 시스템으로 가능하다면 여비지급 문자에 출장 정보 추가 논의 ☐ 검토의견 - 현재 전산시스템 상 구체적인 출장정보를 문자에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- 다만, 안내문구에 출장여비의 지급일자가 아닌 출장일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업체와 논의해보겠음	